

# 대전광역시 대덕구

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# 공 보

<http://www.daedeok.go.kr>

제2021-17호  
2021. 3. 2.(화)

선	기관(부서)의 장
람	

## 차 례

### 기 타 (1)

-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(조례 제1496호) 정정 ..... 1

공  
람

#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정

공보 제2021-13호(2021.2.10.)에 게재된 조례 제1496호(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)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.

2021년 3월 2일

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

공 포 조 례	정 정 내 용	비 고
제23조제12항 중 “3개월”을 “1개월”로 한다.	제23조제12항 중 “ <u>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다</u> ”를 “ <u>30일의 범위에서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다. 다만,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다</u> ”로 한다.	2021.2.10. 2021-13호 전자공보 10쪽 12째줄